

「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1월 1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0년 11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)

가. 제안이유

자치법규 상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, 군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추진함.

나. 주요내용

평창군포상조례 등 조례 7건의 어려운 한자어 순화

: 미연에 → 사전에 / 양양 → 드높임 / 진달 → 송부

: 회무 → 위원회의 사무 / 통리 → 총괄 / 지주목 → 지지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본 조례안은 군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7건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안

제1조(「평창군의회 표창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제2호 중 “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”를 “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”로 한다.

제2조(「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진달(進達)”을 “송부”로 한다.

제3조(「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회무를 통리하고”를 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”로 한다.

제4조(「평창군포상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제3호 중 “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”를 “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”로 한다.

제5조(「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8호 중 “미연에”를 “사전에”로 한다.

제6조(「평창군 농업기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농업기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양양하여”를 “드높여”로 한다.

제7조(「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지주목”을 “지지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□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표창장 및 상장)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한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 등을 포함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사회도의와 <u>미풍양속의 순화양양</u>에 솔선수범한 효자, 효부, 열녀, 그 밖의 선행자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6조(표창장 및 상장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</p> <p>-----</p> <p>-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□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결과보고 및 결과처리) ① ~ ③ (생략) ④ 의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의사항이 포함되어 해당 보고서가 의결된 때에는 이와 별도의 의장명의 문서를 해당 기관 등에 <u>진달(進達)</u>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	제14조(결과보고 및 결과처리) ① ~ ③ (생략) ④ ----- ----- ----- -----송부----- ----- -----.

□ 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원장) ①위원장은 이장이 되며, <u>회무를 통리하고</u>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② (생략)	제 4 조 (위 원 장) -----위원회 의 사무를 총괄하고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□ 평창군포상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표창장) ①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사회도의와 <u>미풍양속의 순화</u>양양에 <u>솔선수범</u>한 자, 효자, 효부, 열녀 그외 선행자</p>	<p>제5조(표창장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-----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</p> <p>-----</p> <p>---</p>

□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"제설·제빙"이란 보도, 이면도로,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<p>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.</p>	<p>사전에----- ----- -----.</p>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평창군 농업기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사가 평창군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기반 시설물(이하“시설물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주민의 애호심과 자조정신을 <u>양</u>하여 이의 선량한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 1 조 (목 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드 높 여 ----- -----.</p>

□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사업) 지원사업은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농업용 자재구입(과수 <u>지주목</u>, 비료 및 농약 등)</p>	<p>제 5 조 (지 원 사 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-----지지대----- -----</p>

3. (생략)

3. (생략)